

의안번호	제22호
의결 년월일	2026. 3. 22. (제335회)

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금산군수
제출년월일	2026. 3. 5.

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2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5.
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1. 개정이유

-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 사항 삭제(안 제23조제3항)
 -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부과 사항 삭제
- 법령 인용 표기 정비 및 법률명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3조제4항, 제3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4조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예산조치 : 비용발생요인 없음
- 기 타
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1274)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1273)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3568)
 - 입법예고(2026. 1. 20. ~ 2026. 2. 9.) : 제출의견 없음

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사업계획서(설계서,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)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” 를 “설계서, 견적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재정법” 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 으로 한다.

제37조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) ① (생략)	제8조(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23조(예산의 지원) ①·② (생략)	제23조(예산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<u>사업계획서(설계서,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)</u> 와 <u>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</u>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설계서, 견적서 등</u> <u>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</u> ----- -----.
④ 상인회는 <u>지방재정법</u> 제32조의6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④ -----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이외의 사항은 「 <u>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</u> 」을 따른다.	제37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「 <u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.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행정규제기본법」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(上位法令)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65조(상인회)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
2.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

3.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
 4.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
 5.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(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6.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 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-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)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,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